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제대군인대부는 3%(일부 4%)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제대군인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3퍼센트에서 최고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최고 연이율 적용 한도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에게 국가가 수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낮추고 당해연도 적용 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20. 6. 18. ~ 7. 31.) 필요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 중 “3퍼센트부터 15퍼센트”를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 율은 연리(年利) <u>3퍼센트부터 15</u> <u>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u> <u>훈처장이 정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u>2퍼센</u> <u>트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u> <u>장이 정한다.</u> 1. ~ 4. (생략)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 ----- ----- <u>1.5퍼센트부터 5.5퍼</u> <u>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u> <u>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 <u>1.5퍼센</u> <u>트</u> ----- -----. 1.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연 락 처	044-202-5731